

인 천 가 정 법 원

제1가사부(비송)

심 판

사 건 2022느합1033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  
2022느합1085 (반심판)기여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장영숙 (610801-2046716)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4, 710동 804호 (원당동, 엘지  
원당자이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정릉로26길 4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지원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 장미숙 (671124-2046723)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995-15 (산막리)

송달장소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 95, 314동 102호 (청라동, 청  
라제일풍경채)

등록기준지 삼척시 적노동 187번지

2. 장연식 (950509-1046912)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6, 103호 (구월동, 현대  
원룸)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용강동 39번지의 1

3. 장성민 (990906-1170317)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34, 710동 804호 (원당동,  
엘지원당자이아파트)

송달장소 부산 북구 팽나무로 36-1, 2층 201호 (구포동)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용강동 39번지의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장준환 (690701-1046721)

주소 김포시 양도로 46, 208동 1501호 (풍무동, 양도마을서해아  
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용강동 39번지의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조예은

## 주 문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본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 및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장준환의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상속인 망 장현진(350119-1046729)의 상속재산인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0.2321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장미숙,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장준환 각 0.2415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장연식 0.0557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장성민 0.2292 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심판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본심판]

피상속인 망 장현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기여분을 40%로 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장미숙, 장연식, 장성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장준환 사이에 적절한 분할을 구한다.

[반심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장준환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 이 유

###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가. 피상속인: 망 장현진(2021. 11. 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1) 배우자: 망 이영희(2017. 6. 2. 사망)

2) 직계비속: 청구인, 망 장준(2017. 9. 7. 사망), 상대방 장미숙, 장준환

다. 망 장준의 가족관계

1) 배우자: 이금복(2004. 1. 28. 이혼)

2) 직계비속: 상대방 장연식, 장성민

라.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 1) 청구인, 상대방 장미숙, 장준환: 각 2/8
- 2) 상대방 장연식, 장성민: 각 1/8(= 2/8 × 1/2)

[인정근거] 갑 1 내지 4,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 2. 분할대상 상속재산

### 가.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별지 상속 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은 모두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되고,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와 이 사건 심문종결 시 가액은 아래와 같다.

순 번	재산내역	가액(원) (상속개시 시)	가액(원) (심문종결 시)	증거
1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12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제1층 제202호	250,000,000	250,000,000	갑 5, 26호증
2	서울 마포구 용강동 39-1 지상 2층 연립주택 비동 제2층 제205호	800,000,000	800,000,000	갑 6, 27호증
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20-2 전 3,121㎡의 7/14 지분	76,308,450	76,308,450	갑 7, 28호증
4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149 과수원 2,740㎡	25,975,200	25,975,200	갑 8, 29호증
소계		1,152,283,650	1,152,283,650	

### 나.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속재산

#### 1)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수협은행에 예치된 33,317,968원 상당의 예금채권,

농협은행에 예치된 90,424,189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가분채권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위 각 예금채권은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2)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연립주택 비동 제2층 제205호와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1,800만 원)와 농협은행 대출금 반환채무(2,927,166원)가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금전채무는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이므로, 위 각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3) 상대방 장준환 주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대방 장준환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상대방 장준환 등에게 증여한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202호 8,000만 원, 201호 6,000만 원, 302호 약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장준환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채무가 있고 위 채무가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장준환 등이 다세대주택 중 각 증여받은 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다세대주택 한 세대씩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상대방 장준환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상대방 장준환 등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위와 같은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4) 청구인 주장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상속비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연립주택 제205호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 청구인과 상대방 장미숙, 장연식이 위 연립주택 제205호에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재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청구인과 상대방 장미숙, 장연식이 상속재산에서 우선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상속인 생전 시 피상속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채무로 보아야 하고 위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 중 일부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청구인 주장의 옥상 바닥 방수 공사 비용 상당의 상속비용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다세대주택 202호를 위해 650만 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청구인에게 우선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갑 33호증(공사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공사 비용으로 650만 원을 부담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청구인이 위 공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는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다세대 주택 202호를 포함한 전체 다세대주택 건물을 위한 옥상 바닥 방수 공사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 모두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위 다세대주택 202호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 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을 위한 관리 및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본심판 및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에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병합) 결정 등 참조].

성년인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병합)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나.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상속인에게 부양 부담이 있는 배우자 망 이영희를 집에서 모시면서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망 장준의 미성년 자녀들 상대방 장연식, 장성민을 집에서 양육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20년경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거나 2021년경 암이 재발하여 사망할 때까지 생업을 중단하고 피상속인을 간병함으로써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

###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까지 망 이영희를 본인의 집에 모셔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나, 망 이영희는 그 기간에 본인의 자택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우석연립 B동 205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은 그 이후인 2013. 9. 27.경이고, 다시 2014. 5. 7.경 상대방 장준환 집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망 이영희가 청구인의 집을 주된 거주지로 하였는지 의문인 점, ② 청구인도 망 이영희가 사채업을 할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많았고 상대방 장준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병원비를 부담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전적으로 본인의 비용으로 자녀로서 부담하는 일반 수준을 초과할 정도로 망 이영희를 부양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형제인 망 장준의 자녀인 상대방 장연식, 장성민과 2014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 장연식, 장성민의 양육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상대방 장준환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④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망 이영희와 상대방 장연식, 장성민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망 이영희와 상대방 장연식, 장성민을 부양하였으며,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내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병원 입원 시 간병을 한 적이 있어 보이나, 그 입원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식으로서 부담하는 일반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상대방 장준환의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 1) 상대방 장준환 주장의 요지

상대방 장준환은 결혼 전인 1998년경부터 본인의 급여를 피상속인과 망 이영희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였고,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다른 형제들을 경제적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결혼을 한 2005년경에도 피상속인과 망 이영희에게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망 이영희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약 4년간 부담하였다. 따라서 상대방 장준환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였다.

#####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장준환이 결혼 전후로 망 이영희에게 급여 일부를 이체하고 신용카드로 병원비

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인정되나, 상대방 장준환은 2009. 6.경 인천 동구 송림동 35-19 건물을 살 때 망 이영희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어 그 동안 있었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상대방 장준환이 모친인 망 이영희의 병원비, 요양비를 부담하였고 형제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망 이영희와 자녀들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 장준환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특별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 장준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 장준환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 장준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 결국 특별수익재산의 상속개시시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와 같이 계산하되,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기준연도 2015년 = 100)는 2021년도 108.137이다.

**나.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1) 인정

순번	수익자	수익내역	수익일시	가액(원) (수익 시 및 상속개시 시)	판단
1	청구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12 제2층 제301호	2007. 11. 30.	250,000,000	다툼 없는 사실
2	상대방 장미숙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12 제2층 제302호	2008. 3. 14.	250,000,000	
3	상대방 장준환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12 제1층 제201호	2008. 2. 4.	250,000,000	
4	상대방 장연식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12 제지하층 제102호	2008. 3. 17.	200,000,000	
5	청구인	현금	2015. 9. 4.	수익 시: 10,000,000 상속개시 시: 10,813,700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 부터 위 금액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녀 유학비

					용으로 받은 것이라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자녀 학비 지급을 위해 생전에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느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계				수익 시: 960,000,000 상속개시 시: 960,813,700	

## 2) 불인정

순번	당사자	내역	일시	금액(원)	판단
1	청구인	현금	2017. 8. 29.	5,000,000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 일자에 위 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망 이영희의 천도제 비용을 받은 것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장준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체된 현금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장준환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대방 장미숙		2018. 2. 13.	11,000,000	피상속인이 상대방 장미숙에게 위 일자에 위 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대방 장미숙은 피상속인이 위 일시경 우리들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상대방 장미숙이 부담한 병원비를 추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장준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체된 현금이 상대방 장미숙의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장준환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 1. 3.	2,700,000	피상속인이 위 각 상대방에게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대방 장준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이체된 현금이 위 각 상대방의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장준환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대방 장연식		2021. 3. 24.	15,000,000		
5	상대방 장성민		2018. 8. 26.	5,000,000		
6			2020. 2. 21.	3,903,000		
7			2020. 3. 13.	2,000,000		
8			2020. 9. 4.	2,000,000		
9			2021. 9. 1.	2,000,000		
10	청구인	부동산	2000. 3. 22.			상대방 장준환은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자녀 박현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바 사실상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장준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독립 생계를 하는 성년 자녀인 박현희에 대한 증여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위 증여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바, 상대방 장준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구체적 상속분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

항목	금액(원)
상속재산(상속개시 당시)	1,152,283,650
청구인의 기여분	0
상대방 장준환의 기여분	0
특별수익	960,813,700
간주상속재산 합계	2,113,097,350

나.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2)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기여분액 - 특별수익

3) 구체적 상속분율 = 구체적 상속분액 ÷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액

상속인	법정 상속분	법정상속분액(원) <sup>1)</sup>	특별수익(원)	구체적 상속분액	구체적 상속분율 <sup>2)</sup>
청구인	2/8	528,274,337	260,813,700	267,460,637	0.2321
상대방 장미숙	2/8	528,274,337	250,000,000	278,274,337	0.2415
상대방 장연식	1/8	264,137,168	200,000,000	64,137,168	0.0557
상대방 장성민	1/8	264,137,168	-	264,137,168	0.2292
상대방 장준환	2/8	528,274,337	250,000,000	278,274,337	0.2415
	1	2,113,097,347	960,813,700	1,152,283,647	1

## 6.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② 상속재산 중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1) 원 미만 버림

2)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어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속재산을 경매분할하는 방식이 청구인과 상대방들 중 어느 일방에게 크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 0.2321 지분, 상대방 장미숙, 장준환 각 0.2415 지분, 상대방 장연식 0.0557 지분, 상대방 장성민 0.2292 지분의 비율로 각 분할하는 것으로 정한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 및 상대방 장준환의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고, 청구인의 본심판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3. 6. 22.

재판장      판사      홍      성      옥



            판사      황      지      영



            판사      최      지      연



[별지]

## 상속재산 목록

순번	종류	표시
1	부동산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12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제1층 제202호
2	부동산	서울 마포구 용강동 39-1필지 지상 2층 연립주택 비동 제2층 제205호
3	부동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20-2 전 3121㎡의 7/14 지분
4	부동산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149 과수원 2740㎡



정본입니다.

2023. 6. 22.

인천가정법원

법원주사보 김성진

